

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‘학교(원)장 허가 교외체험학습’ 운영 규정

제1조(개념)
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(원)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 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
제2조(지침)

-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학칙·규칙에 따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.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등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)
- 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(원)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(최소 반일(4시간)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.)
-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.
- ④ 학교의 ‘학교(원)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-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 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.
- ⑥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
제3조(학습 형태)

- ① 현장 체험학습
- ② 친인척 방문
- ③ 가족 동반 여행
- ④ 고적 답사
- ⑤ 향토 행사
- ⑥ 기타 학교(원)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

제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
-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- ②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, 학칙·규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, 지필 평가 기간(모든 지필 평가 포함), 고입 원서 작성 기간(전기, 후기 원서 작성 기간) 등
- ③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
- ④ 이 외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

제5조(결과 처리)

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.

제6조(기 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학교규칙」, 「광주광역시교육청 ‘학교(장)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 운영요령」과 「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을 준용한다.

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신청서				담임	부장
성명			학년 반 번	휴대폰	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10 일	신청 기간(시간)	20 년 월 일(:) ~ 월 일(:) ()일간/()시간			
	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기간 확인 ※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		(○ , ×)
학습형태	◦ 가족동반여행() ◦ 친·인척 방문() ◦ 답사·견학 활동() ◦ 체험활동() ◦ 기타()				
목적지			(숙박시) 숙박장소		
보호자명		관계		휴대폰	
인솔자명		관계		휴대폰	
목 적					
교외 체험 학습 계획	1일차				
	2일차				
	3일차				
	※ (필수 유의사항)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(예시: 2~3일째 되는 날)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,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겠습니다.				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보호자 : (인) 학생 : (인)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귀하					

----- (이하 담임 작성) -----

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 허가서

성명			학년 반	제	학년 반 번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10 일	신청 기간	20 년 월 일 ~		월 일() 일간	
	허가 기간	20 년 월 일 ~		월 일() 일간	
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()일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		
	20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 : (인) 보호자님 귀하				

- ※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한 허가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.
- ※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은 5일 이내
- 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합니다.
- ※ (필수 유의사항)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(예시: 2~3일째 되는 날)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,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합니다.

〈서식 2〉

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 결과보고서

담임	부장

[illegible]

※ 보고서 제출 기한: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

※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						담임		부장			
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신청서											
성 명					학 년 반 번		휴대폰				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10 일		신청 기간		20 년 월 일 ~ 월 일() 일간							
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※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							(○ , ×)		
학습형태		가정학습									
장 소		자택 (주소: _____)									
보호자명				관계		휴대폰					
목 적		※ (반드시 포함하여 신청)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(2~3일째 되는 날)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, 체험 장소 등을 공유하겠습니다.								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 계획		교시	교과	※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.							
		1									
		2									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보호자 : (인) 학생 : (인)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귀하											

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 허가서

성명			학년 반		제		학년 반 번	
본교 출석인정기간	신청 기간	20	년	월	일 ~	월	일()	일간
연간 (10)일	허가 기간	20	년	월	일 ~	월	일()	일간
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					
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()일	20 . . .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 : (인) 보호자님 귀하							

- 4 -

<서식 4>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결과 보고서

담임	부장

성명			학년 반	제 학년 반 번			
가정학습 기간			20	년	월	일 ~ 월	일 () 일간
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장소							
학습형태	가정학습						
제 목						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 결과	교시	교과	※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,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.				
	1						
	2						
	3						
	4						
	5						
	6						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
20 년 월 일							
						보호자 :	(인)
						학생 :	(인)
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귀하							

※ 학습결과보고서는 ~~ 시기에 ~~~ 방법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보고서 제출 기한: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종료 후 (5)일 이내

※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.